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김태현

대한민국 06626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43 신덕빌딩
9층

발송일 (일/월/년) 2020년 04월 20일 (20.04.2020)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OEC12021PCT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9/016373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11월 26일 (26.11.2019)

우선일 (일/월/년)
2018년 12월 06일 (06.12.2018)

국제특허분류(IPC)
H04L 12/28(2006.01)i, G08C 17/02(2006.01)i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20년 04월 20일 (20.04.2020)

심사관
김성희
전화번호 +82-42-481-3516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b)).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5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2017-0001434 A (엘지전자 주식회사) 2017.01.04

D2: KR 10-1233783 B1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2013.02.15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1. 청구항 1, 12

청구항 1과 가장 근접한 D1에는 송신 장치의 식별 신호를 수신하고, 기준 방향에 대해 돌아간 각도를 감지하는 이동 단말기(단락 [0023], [0118] 참조)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1의 원격 제어 장치가 식별 정보 및 각도에 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하는 점 및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외부 장치를 식별하고, 각도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제어 장치의 지향 상태를 판단하며, 원격 제어 장치가 외부 장치를 지향하는 상태에서 식별 정보를 수신한 것으로 판단되면, 식별된 외부 장치를 조작 가능한 외부 장치로 등록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D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있는 구성은 D2의 리모컨이 타겟기기를 포인팅한 상태에서 기기 등록 버튼을 입력하면, 텔레비전이 리모컨의 지시방향을 얻고 지시방향 및 위치데이터를 결합하여 타겟기기를 추출하는 점(단락 [0009], [0010]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2는 원격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각도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제어 장치가 등록된 외부 장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등록된 외부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UI를 포함하는 화면을 표시하는 점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청구항 1과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있는 구성은 D1의 이동 단말기가 디바이스 방향으로 지향되는 경우 디바이스의 원격 제어를 위한 원격제어 오브젝트를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점(단락 [0032]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 12는 D1,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2. 청구항 2-11, 13-15

청구항 2의 추가적인 특징은 D2의 로테이션 신호송신부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향하도록 자동적으로 방향전환하는 점(단락 [0065]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3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디바이스의 원격 제어를 위해 원격제어 오브젝트의 제어 명령 정보를 이동 단말기가 수신하는 점(단락 [0036]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4, 7, 8, 13, 15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D1의 이동 단말기가 제1 디바이스 방향으로 지향되는 경우 제1 원격제어 오브젝트를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제2 디바이스 방향으로 지향되는 경우 제2 원격제어 오브젝트를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점(단락 [0032]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5, 14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D1의 디바이스 제어 가능 메시지를 사운드로 출력하거나 LED를 발광하거나 진동을 출력하는 점(단락 [0052]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6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디바이스의 원격제어를 위해 제어 명령을 매칭하는 점(단락 [0372]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9의 추가적인 특징은 D2의 타겟기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점(단락 [0052]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0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이동 단말기가 출력 신호의 반사 신호를 수신하고, 식별 신호를 검출하여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점(단락 [0200], [0201]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1의 추가적인 특징은 D1의 공간 기반의 패턴 신호를 검출하고, 저장된 공간 기반의 패턴 신호 관련 데이터를 비교하여 디바이스를 식별하는 점(단락 [0050] 참조)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2-11, 13-15는 D1,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15는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